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기출문제

## 행 정 법

### 문제1

#### <기본적 사실관계>

X市的 시장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의 소유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였다. 乙은 A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A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乙은 사업 대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甲이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Y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각을 재결하였다. 이에 甲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위 재결취소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

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때에 甲이 승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위 재결취소소송에서 甲은 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때에 甲이 승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乙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있던 경우와 ② 乙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생긴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문제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참고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

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

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삭제

④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⑤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민 법

### 문제1

#### <기본적 사실관계>

A는 2017. 1. 15. B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매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B는 2017. 2. 1.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와 B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때 (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B는 A에게 차임으로 2017. 6. 30. 30만 원, 2017. 7. 31. 50만 원, 2017. 8. 31.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9. 30.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0. 31.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017. 11. 1. 현재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B는 A에게 2017. 6. 30. 및 2017. 12. 31.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A는 2018. 1. 15.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1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2018. 2. 28.부터는 C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8. 6. 30.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

- 다. 2018. 7. 1. 현재 C가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설명하십시오(해지권 행사 방법의 요건구비 여부는 논외로 함). (1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B는 A에게 차임으로 2018. 4. 30. 30만 원, 2018. 5. 31. 20만원만 지급하였고, 2018. 6. 30.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는 2018. 7. 14.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B는 그 다음날 위 우편물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8. 8. 31.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A에게 열쇠를 반환하였다. A는 B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20점)

### 문제2

####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2. 1. 1.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연손해금 월 2%(각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乙의 친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甲의 요구에 따라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2014. 1. 1. 현재 甲의 남은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십시오(甲과 丙 간에 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丙이 위 차

용금의 원금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甲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함).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7.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①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②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7. 1.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丙의 각 주장①, ②, ③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변제기 이후로 위 차용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甲은 2018. 7. 1. 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밝혀진 사실과 甲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丙이 2014. 1. 1.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甲과 丙이 이를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다툼없이 인정됨  
 ○ 甲은 丙의 위 2014. 1. 1.자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丙의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甲은 2018. 7. 1. 현재 丙에게 '위 차용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가. 위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위 인정된 사실과 위 가.에서 甲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전제로) 이 사건 소에서 인용될 수 있는 甲의 채권액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결론은 판례에 의함). (15점)

## 민사소송법

### 문제1

1. 민사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설명하되, 토지관할과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함께 설명하시오. (25점)  
 2. 私人間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문제2

#### <기본적 사실관계>

상인인 甲은 2007. 1. 1. 상인인 乙, 丙, 丁에게 사업자금으로 각 1억 원씩을 대여하였다.

乙, 丙, 丁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甲은 2018. 1. 1. 乙, 丙, 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경과는 아래와 같다.

① 乙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기록상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② 丙에 대한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기록상 甲이 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③ 甲이 제출한 소장부분이 丁에게 송달되자 丁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1억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甲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丁이 돈을 빌려간 시점은 2007. 1. 1.이 아닌 2009. 1. 1.이다.”라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乙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丙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丁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법원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2018. 5. 31. 乙, 丙, 丁에 대한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아래 각 문항의 추가 설명을 전제로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4. 丙은 2018. 7. 31.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8.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丙에 대한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것은 丙이 전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추완항소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丙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丁은 2018. 6. 6.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① 주위적으로, 甲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② 예비적으로,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의 채권과 상계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② 주장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丁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형법

### 문제1

甲은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乙의 동의하에 乙 명의로 등록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甲은 2018. 5. 28.경 丙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은 2018. 7. 18. 11: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丙의 집 정원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丙 모르게 몰고나와 운전하다가 양평군에 있는 도로변에 버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의 형법상 죄

책을 논하시오. (50점)(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제2

A는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에 처분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A는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의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운반책들을 모집한 뒤 금괴를 나누어 일본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甲은 A의 아들인 乙의 친구로서 乙을 통하여 A가 금괴 무역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乙에게 함께 A가 운반하는 금괴를 빼돌리자고 제안하였고, 乙은 甲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친구인 丙과 함께 셋이서 범행을 계획하였다. A는 홍콩 공항에서 甲과 乙에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와 함께 각 4kg씩 금괴를 나누어주고 일본으로 가 A의 직원 B에게 금괴를 인도하라고 지시하면서 甲과 乙을 감시하기 위하여 C를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도록 하였다. 甲과 乙은 공항에서 C의 감시 아래 있다가 마치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하면서 감시를 따돌리고 공항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화장실 안에 있던 丙에게 금괴를 건네주었고,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와 금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丙은 甲과 乙로부터 건네받은 금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4kg을 초과하는 금괴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건네받은 금괴 중 4kg을 부수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 4kg만 한국으로 가져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 乙, 丙의

형법상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 문제1

1. 검사는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에 대해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에 대해서는 "내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A와 검찰 조사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던 통역인 B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경찰관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내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통역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통역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된 것이 맞다. 조사 후에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주며 확인할 때에도 피고인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0점)
-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0점)
2.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30점)

## 문제2

### <기본적 사실관계>

검사 S는 甲을 2015. 6.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438,000건의 영화나 드라마를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 S는 피고인 甲을 위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저작권법위반 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은 채 CD(컴퓨터용 디스크-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甲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경우 CD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15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 S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술에 의해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CD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甲은 검사 S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CD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5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 S의 소속실 검찰주사 D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임대해준 웹서버 임대회사 담당자 A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검찰주사 D는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위 검찰주사 D만 기명 날인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사 S는 이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검사 S는 위 수사보고서는 A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검찰주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주사 D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 수사보고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0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검사 S는 甲의 종업원으로서 위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잘 알고 있는 B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B가 甲의 보복이 두려운다고 출석을 거부하자 가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B를 출석시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가명으로 된 B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B는 증인으로 출석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였음). 이 경우 B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0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피고인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甲은 제2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하였는데, 출석한 甲의 변호인 P는 甲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P의 증거동의를 유효한지 설명하십시오. (5점)

6.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피고인 甲의 공범인 乙은 사법경찰관 C의 조사 후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다. 피고인 甲은 사법경찰관 C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 상 법

### 문제1

1. A, B, C는 甲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설립자본금을 균등한 비율로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세 명 모두 발기인으로 등재하였다. A는 자신이 납입하기로 한 5천만 원의 주식대금을 Z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금 취급은행에 납입하였다. 그 후 주주총회에서 A가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D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가. A가 회사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설립사실을 알고 있는 Y에게 회사설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나. A의 주식대금납입과 관련하여 甲회사 설립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다. A는 감사 D의 선임결의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감사 임용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D가 甲회사를 상대로 감사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상호등기(商號登記)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2

#### <기본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라고 함)는 일용잡화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1.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A회사의 자본금은 10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20만 주인데,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甲이 A회사의 발행주식 중 4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회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7. 3. 2. 乙에게 A회사의 발행주식 4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乙은 2017. 9. 1. A회사에 대하여 위 4만 주에 관한 명의 개서를 청구하였으나, A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9. 29. A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甲이 위와 같이 A회사의 발행주식 4만주를 乙에게 양도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그런데 A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甲으로부터 주식양도사실의 통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A회사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7. 8. 2. 乙에게 A회사의 발행주식 4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의 통지를 미루고 있었다. A회사는 2017. 9. 29. 정관을 개정하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같은 날 그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였다.

甲은 2017. 11. 2. 비로소 A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후 乙은 A회사를 상대로 4만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개정 정관 이전에 주식양도사실이 A회사에 통지되지 않았고, 개정 정관 이후에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므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각하, 기각, 인용)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7. 8. 2. 乙에게 A회사의 발행주식 4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회사는 위 4만주에 관하여 乙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甲은 4만주의 주식을 위와 같이 乙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아직 A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17. 9. 29. 丙에게 위 4만주를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甲의 부탁을 받은 A회사는 4만주에 관하여 乙 명의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丙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乙과 丙이 현재까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甲, 乙, 丙 중 누구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 부동산등기법

### 문제1

아래[사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① 임야 2,000㎡와 ② 전 1,000㎡를 토지 소유자인 A로부터 B종중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종중은 그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종중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함).

1. ①토지 및 ②토지에 대하여 A로부터 B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각 설명하시오. (15점)
2. 위 1항에서 A로부터 B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
  - 가. 종중의 등기당사자능력 및 등기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나. 이 때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 문제2

1. 부동산등기의 공동신청주의(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중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면서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乙이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상속인 丙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